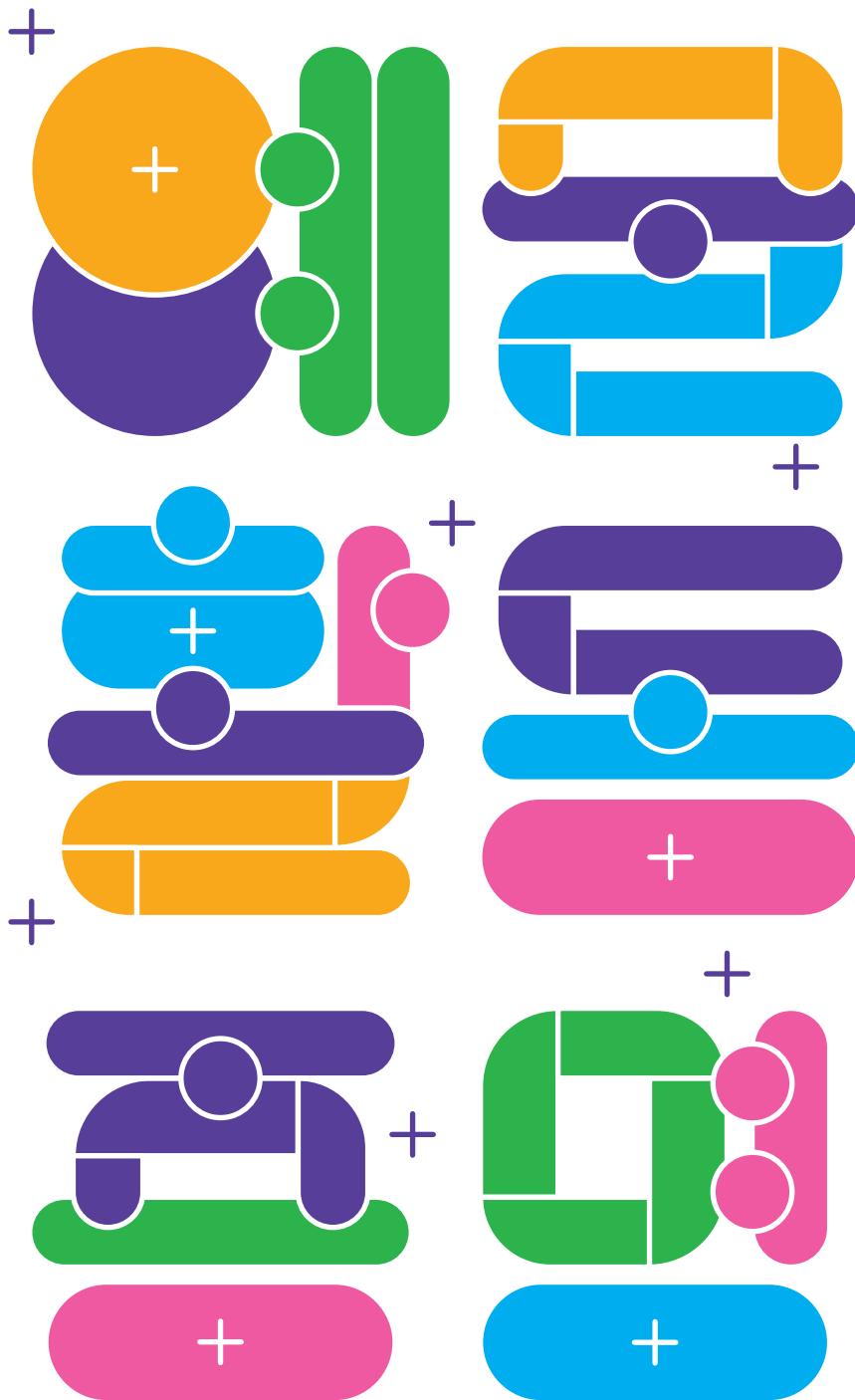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PROOF OF ARTISTIC ACTIVITY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부산시립미술관
Busan Museum of Art

CONTENTS

예술활동증명

1

＋ 예술활동증명이란?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전에 먼저 마쳐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 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1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p.03 1. 예술활동증명

p.04 2. 신청절차

p.05 3. 신청 및 결과 확인

p.07 4. 신청방법

p.08 (1) 예술활동증명(일반)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예술활동 수입

- 기준 외 활동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p.13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p.17 (3) 예술활동증명 특례

p.17 5. 간신

＋ 예술 분야

문학 / 사진 / 건축 /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국악 / 무용 / 연극 /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 영화 / 만화 / 연예(방송, 공연)

※ 2개 이상 예술분야 동시 활동의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 선택 가능

＋ 예술 활동 유형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 예외사항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국적등포 국내거소신고증, 난민인정증명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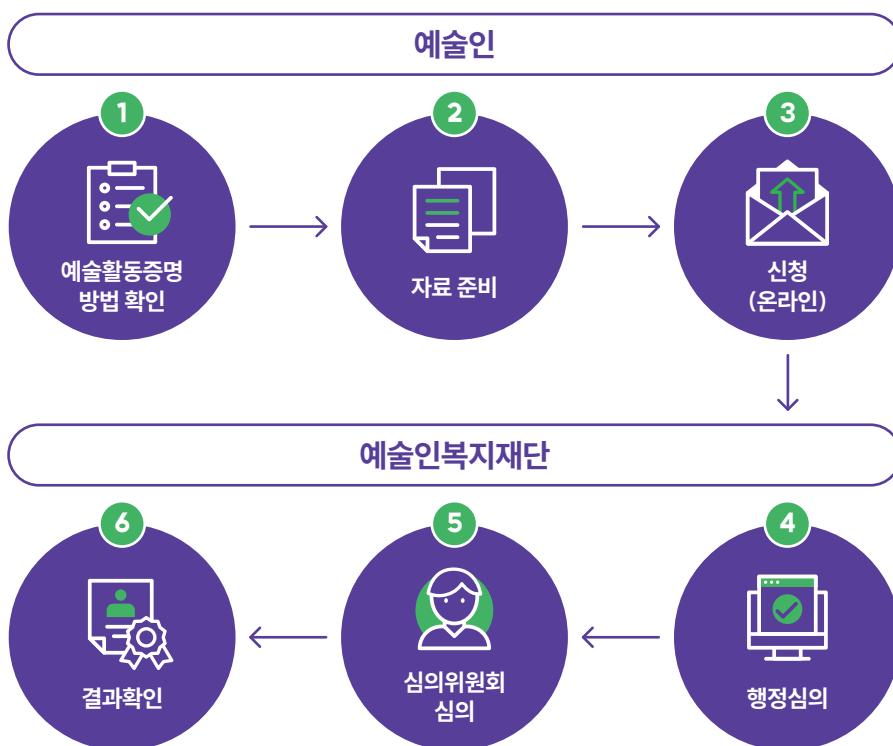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조제4항을 참고

신청절차

2

+ 예술활동증명,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 신청을 해주세요. 각 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미완료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꼭 예술활동증명 방법과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결과확인

3

+ 신청 및 결과 확인 +

+ 온라인 신청 +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 | www.kawfartist.kr

회원가입 >> 본인인증 >> 예술활동증명 내용 입력 및 자료 첨부 >> 신청완료

*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치시면 문자, 메일로 '신청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마지막 단계 <신청하기>버튼을 눌러주셔야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술인복지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 및 신청 지원해드립니다.

전화 051-745-7236.239 (평일 9:00~18:00)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전화 02-3668-0200 (평일 9:00~18:00)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결과확인

- 소요기간 3~4개월
- 결과 확인 문자, 전자우편 공지

* '완료' 혹은 '미완료'로 결과 공지되며, 미완료 시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될 수 있으며, 심의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통신장애로 결과 공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력정보 시스템 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십시오.

+ 신청시 유의사항

- 학교(사설교육기관)내 예술활동, 학생이 대상인 예술활동은 직업 예술활동에 미포함 됩니다.
(예: 졸업전시회, 과정기공연 등)
- 경연대회(콩쿠르, 공모전), 봉사활동, 축제, 행사의 출연이나 기획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활동에 미포함 됩니다.
(단, 경연의 성격이 있으나 일정 수준을 전제한 공연의 출연은 전문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출판분야, 강의/교육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문화재청의 확인(재단이 확인)을 통해 예술인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가 위 · 변조된 자료이거나 실적이 허위인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취소되며 향후 일정기간동안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예술인복지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예술인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 회수 조치 될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택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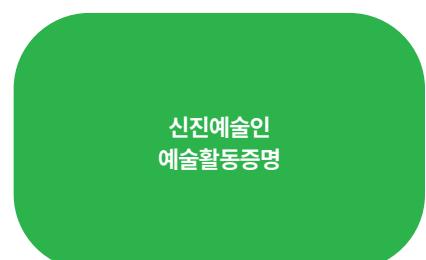
1

예술활동증명(일반)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3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활동증명(일반)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예술 분야, 직업별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문학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 직업별 기준**
- 시인, 수필가 5편 이상의 시(시조, 동시 포함),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소설가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동화 포함),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희곡작가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
 - 비평가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공통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 세부 기준**
- 1권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 받은 서적
 - 문예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부여,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잡지, 장르별 문예지,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 순수 창작 저술 활동(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 미포함)이 주가 되고 교육·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등단 여부,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

- 자료**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시는 3편 이상, 소설·수필 등 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미술, 사진, 건축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 직업별 기준**
- 작가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 비평가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3년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세부 기준**
-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 1권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서적
 - 1편 독립된 작품
- * 건축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

- 자료**
- 전시
 - 리플릿 표지+내지
 - 도록 표지+내지
 - 작가명 및 전시작품 확인가능한 전시장 내 작품 사진(전시참여확인서(또는 계약서)로 대체 가능) 등 3개 자료 제출
 - 작품(비평)집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음악, 국악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 직업별 기준**
- 가창자, 연주자 아래 종 택1
 -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1장 이상의 음반 출간
 - 작사(곡), 편곡가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 비평가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 출간
 - 지휘자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음악·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 세부 기준**
- 1편 또는 1곡 독립된 작품
 - 동일명칭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 독립된 다른 작품으로 인정
 - 1장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디지털 음반 포함,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
 - * 유통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

- 자료**
- 공연(일반음악, 국악)
 - 포스터
 - 리플릿(표지+내지) 등 2개 자료 제출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 공연(대중음악)
 - 포스터(또는 리플릿(표지+내지))
 -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 등 2개 자료 제출
 - 음반
 - 앨범발행 포털자료(URL 포함)(앨범커버, 발행정보, 크레딧 확인 필요) 자료 제출 (저작권 등록 자료로 대체 가능)
 - 악곡(음원)
 - 스트리밍서비스 저작권 확인 캡처본 및 URL 자료 제출 (저작권 등록 자료로 대체 가능)
 - 작품(비평)집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무용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 직업별 기준**
- 무용수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 안무가 1회 이상 무용 공연 안무 담당
 - 비평가 3편 이상의 무용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무용 공연 참여

- 세부 기준**
-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 *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료**
- 공연(무용수, 안무가, 기획 및 기술지원 스태프)
 - 포스터
 - 리플릿(표지+내지) 등 2개 자료 제출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 * 안무가의 경우, 공연성격(세부장르)·공연규모·공연시간(런타임) 등이 확인되는 자료 제출 필요
 - 작품(비평)집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연극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 연기자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기준 · 연출가 1편 이상 연극 공연 연출

· 극작가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 비평가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참여

세부 기준 ·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 학생 공연지도, 작품 개발 단계의 낭독공연은 미인정

* 동일작품이라도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2편으로 인정,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편으로 인정

자료 · 공연(연기자, 연출가, 극작가, 기획 및 기술지원 스태프)

- 포스터

- 리플릿(표지+내지) 등 2개 자료 제출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장기 출연 확인(실제 참여한 회차 기재) 가능한 계약서 및 출연료 지급 통장 내역 첨부

· 작품(비평)집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 · 발행일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연예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 배우 · 개그맨 · MC · 프로듀서 등(다음 중 택 1)

기준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에 출연한 자

-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 연출자 또는 진행자(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

· 비평가 3편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비평집을 출간

· 패션모델 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 공연자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

· 작가 1편 이상의 대본을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

(* 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세부 기준 · 1편 독립된 작품을 말하며 동일명칭 공연·방송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 독립된 다른 작품으로 인정

자료 · 연예(공연)

- 포스터

- 플릿(표지+내지) 등 2개 자료 제출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 연예(방송)

- 출연(참여)확인 가능 자료(방송국 홈페이지 화면(URL주소 포함))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제출

· 작품(비평)집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 · 발행일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영화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 연기자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출연

기준 · 연출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연출(단편 영화의 경우 최근 3년)

· 시나리오 작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를 통해 발표

· 비평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비평집 출간

· 극작가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5년 동안 2편 이상 영화 작품 참여

세부 기준 · 1편 「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 단편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라 40분이 넘지 않는 영화: 학생작품 참여 · 지도, 학교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료 · 영화(연기자, 연출가, 시나리오작가, 극작가, 기획 및 기술지원 스태프)

- 출연(참여)확인 가능 자료(포털영화검색자료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

ISBN Korea 등) 제출 (출연계약서(또는 출연(참여)확인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 작품(비평)집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 · 발행일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직업별 · 만화가 아래 중 택 1

기준 -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 비평가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자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자 / -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참여한 자
(* 기술지원 스태프는 2년 이상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세부 기준 · 1편 독립된 작품

·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 1권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서적

자료 · 작품(만화, 비평)집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 · 발행일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 연재 작품

- 연재정보(연재플랫폼 화면(URL주소 포함))

- 연재계약서(또는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입증빙자료) 등 2개 자료 제출

· 전시

- 리플릿 표지+내지 / - 도록

- 작가명 및 전시작품 확인 가능한 자료(전시 현장 전경, 계약서(또는 확인서)) 등 3개 자료 제출

공통사항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확인서)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첨부
- 기획 및 기술지원으로 참여한 경우, 창조력과 속련도를 전제로 저작물 또는 저작물 공표에 상당한 예술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 제출자료는 가급적 이미지파일(JPG)로 제출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언론매체 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출 시 URL 주소 포함하여 첨부

+ 예술활동 수입

최근 1년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원 이상, 최근 3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360만원 이상 혹은 최근 3년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료 : 수입 내역 및 관련 활동 자료 반드시 함께 접수

예술활동 확인자료

(작품명/발표연도/일시/신청자명/역할/주최주관 확인가능한)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

+ 기준 외 활동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지만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 수입 기준을 적용할 때 예술활동증명이 어려운 예술인(예.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자료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자료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에 한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자료

보유자, 전승교육사

①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확인서류

이수자

①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확인서류

②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자료(포스터, 리플릿, 계약서 등)

* 보유자 후보자, 전수자는 인정하지 않음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라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 활동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문학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인, 수필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소설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소설(동화 포함),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세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가 부여된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 · 잡지, 장르별 문예지,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 순수 창작 저술 활동(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 미포함)이 주가 되고 교육·교양·여가·문화·예술 분야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등단 여부,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 · 발행일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작품 수록면(시는 3편 이상, 소설 · 수필 등 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미술, 사진, 건축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 · 사진 ·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 · 사진 · 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 · 사진 ·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 · 사진 · 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
세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1권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 받은 서적· 1편 독립된 작품 / 건축 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플릿 표지+내지- 도록 표지+내지- 작가명 및 전시작품 확인가능한 전시장 내 작품 사진(전시참여확인서(또는 계약서)로 대체 가능) 등 3개 자료 제출· 작품(비평)집<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 · 발행일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음악, 국악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창자, 연주자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등에 출연 또는 1곡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자 최근 2년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지휘자 최근 2년동안 음악 국악 공연에서 1회이상 지휘 참여 비평가 최근 2년동안 음악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회 이상의 음악 국악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에 참여하였거나 1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세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 또는 1곡 독립된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에만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 -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1장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디지털 음반 포함,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소 공연은 미인정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일반음악, 국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 리플릿(표지+내지) 등 2개 자료 제출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공연(대중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또는 리플릿(표지+내지)) -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 등 2개 자료 제출 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앨범발행 포털자료(URL 포함)(앨범커버, 발행정보, 크레딧 확인 필요) 자료 제출 (저작권 등록 자료로 대체 가능) 악곡(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리밍서비스 저작권 확인 캡처본 및 URL 자료 제출 (저작권 등록 자료로 대체 가능) 작품(비평)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무용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용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세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 독립된 작품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무용수, 기획 및 기술지원 스태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 리플릿(표지+내지) 등 2개 자료 제출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작품(비평)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연극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자 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비평가 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2년동안 1편 이상 연극 공연 참여
세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 독립된 작품을 말하며 동일명칭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 독립된 다른 작품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공연 참여 · 지도,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동일작품이라도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2편으로 인정,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편으로 인정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연기자, 기획 및 기술지원 스태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 리플릿(표지+내지) 등 2개 자료 제출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장기 출연 확인(실제 참여한 회차 기재) 가능한 계약서 및 출연료 지급 통장 내역 첨부 작품(비평)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 · 발행일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영화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자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출연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2년동안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 영화 작품 참여
세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단편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40분이 넘지 않는 영화. 학생작품 참여 · 지도,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연기자, 기획 및 기술지원 스태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참여)확인 가능 자료(포털영화검색자료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 ISNIKorea 등) 제출 (출연계약서(또는 출연(참여)확인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작품(비평)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 · 발행일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연예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 등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에 출연한 자 • 패션모델 최근 2년 동안 1회이상 패션쇼에 출연하거나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 공연자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 •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세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독립된 작품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방송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 리플릿(표지+내지) 등 2개 자료 제출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 연예(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참여)확인 가능 자료(방송국 홈페이지 화면(URL주소 포함)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제출 • 작품(비평)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 · 발행일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만화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가 아래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아래 중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세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독립된 작품 •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 1권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 받은 서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만화, 비평)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 · 발행일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 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 연재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재정보(연재플랫폼 화면(URL주소 포함)) - 연재계약서(또는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입증빙자료) 등 2개 자료 제출 •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플릿 표지+내지 - 도록 - 작가명 및 전시작품 확인 가능한 자료(전시 현장 전경, 계약서(또는 확인서)) 등 3개 자료 제출

공통사항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확인서)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첨부
- 기획 및 기술지원으로 참여한 경우,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저작물 또는 저작물 공표에 상당한 예술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 제출자료는 가급적 이미지파일(JPG)로 제출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언론매체 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출 시 URL 주소 포함하여 첨부

3

예술활동증명 특례

+ 산재보험 · 사회보험료 지원 · 예술인신문고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신고를 위한 특례 :

산재보험 가입,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신문고 등을 위해 관련

'서면 계약서' 만으로 한시적인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자료 (①~③ 항목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면계약서 제출)

① 예술활동 정보(주최 · 주관, 활동명, 활동(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금액 지급주체 등)

② 참여정보(신청자명(예명 포함), 신청자 역할)

③ 계약체결일 및 계약당사자 양측의 날인

※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청 전, 예술인신문고 신고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 해야 함

갱신

5

+ 예술활동증명 갱신 +

직업 예술인으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갱신일(유효기간)이 설정되어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 소설가로 2015년 1월 예술활동증명(공개발표된 예술활동)을 마친 경우 2020년 1월이 갱신일로 지정

(재)부산문화재단 2022-024호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bawsc.bscf.or.kr

051-745-7236,239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02-3668-0200

부산문화재단

www.bscf.or.kr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B.M.A.D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B.F

부산예술인복지재단
B.A.B.F